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행정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명시 등
제도 운영 개선〉

■ 이성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368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행정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명시 등(안 제8조제3항 신설)	3
2. 행정사 자격증 대여 등 금지 및 위반 시 자격취소, 벌칙 규정 (안 제13조, 제30조, 제36조)	7
3. 폐업신고 관련 직권 말소(안 제16조제2항 신설)	13
4. 업무정지 사유 추가 및 행정사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사회의 업무정지처분 요청 신설(안 제32조)	16
5. 행정사회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권 강화(안 제29조)	21
6. 과태료 부과기준 재검토 삭제(안 제35조의2 삭제)	2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성권의원 등 16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26.
3. 회부연월일 : 2024. 9.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행정사의 결격사유 및 행정사의 업무신고 폐업·휴업 신고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행정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이 불명확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대한행정사회의 감독기관 보고 의무 등이 부재하며, 행정사의 폐업 신고 없이 사망한 경우 행정사 현황 파악에 제한이 발생하고, 행정사의 위법행위 시 벌금 외에는 제재 조항이 없어 행정사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행정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을 최종 합격발표일로 명시하여 시험 준비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한행정사회의 총회 의결 내용을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며, 의결 내용이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감독기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폐업 신고 없이 행정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시장등이 폐업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행정사회가 시장등에게 행정사의 업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5항, 제32조제4항 등).

Ⅲ. 검토의견

1. 행정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명시 등(안 제8조제3항 신설)

개정안은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을 행정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발표일로 하고,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이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명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8조(행정사 자격시험) ①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신 설> ※참고 조문 「행정사법」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조(행정사 자격시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6조*의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은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 경우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행정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발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u>

현행	개정안
7. 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행정사법」 제2조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관한 내용으로,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행정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¹⁾에 위탁할 수 있음.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등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위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운영 지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등의 양성·관리를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운영 지원
5. 자격검정 및 자격취득자의 등록·관리
- 5의2.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 및 활용 지원
6. 해외취업 지원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 등 고용촉진 사업
7.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8. 숙련기술 장려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이나 그 밖의 부대사업
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
11.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및 고용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또한 동법 제6조는 행정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행정사 자격시험 공고문에 동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고, 합격하더라도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이 최종시험 시행일임을 공고하고 있음.²⁾

이와 관련하여,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으로 수험자의 권리가 침해³⁾되고 있어 자격 관련 법령에 결격사유 기준일을 명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현재 「공인노무사법」⁴⁾, 「변리사법」⁵⁾, 「관세사법」⁶⁾, 「세무사법」⁷⁾ 등은 결격

2)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계획 공고(2024.2.29.) 한국산업인력공단)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다만,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결격사유 (행정사법 제5, 6조)

※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2024. 10. 05.)

※ 행정사법 제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 원서접수부터 자격 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 존재 - 따라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지, 즉 결격사유 기준일은 자격 취득과 밀접하게 결부되는 사항임.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전문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을 명확화 방안”, 2018.4. p.5.)

4)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 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⑤ (생략)

5) 「변리사법」 제4조의2(변리사시험) ①·② (생략)

사유 기준일(최종 합격 발표일)과 결격사유 해당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유사 입법례에 따라, 「행정사법」에도 자격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이 최종 합격 발표일이고 결격사유 해당 시 시험응시가 불가함을 명확히 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
- ③ 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제4조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한다)은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④·⑤ (생략)
- 6) 「관세사법」 제6조(관세사 시험) ① (생략)
② 관세사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5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④ (생략)
- 7) 「세무사법」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① (생략)
②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행정사 자격증 대여 등 금지 및 위반 시 자격취소, 벌칙 규정

(안 제13조, 제30조, 제36조)

개정안은 행정사 자격증의 대여 및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고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u>신고확인증을</u>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u>신고확인증을</u>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신고확인증의</u>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u>신고확인증 또는 자격증의</u> 대여 등의 금지) ① ----- <u>신고확인증 또는 자격증을</u> ----- -----. ② ----- <u>신고확인증 또는 자격증을</u> ----- -----. ③ ----- - <u>신고확인증 또는 자격증의</u> ----- -----.
제30조(자격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u>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u> 대여한 경우	제30조(자격의 취소)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u>신고확인증 또는 자격증을</u> ----- -----

현행	개정안
3.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업으로 한 자 2. 제13조(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u>신고확인증</u>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행정사, 행정사법인과 이를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행정사업무신고 또는 법인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사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벌칙)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 --<u>신고확인증 또는 자격증</u>--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업무를 한 자 2. 제21조의2에 따른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22조제4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한 자 4. 제22조제5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를 한 자 5. 제23조(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6.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2항(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자 2. 제22조제1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한 자 3. 제22조제2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당사자 양쪽으로부터 같은 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4. 제22조제3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한 자 5. 제22조제6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한 자 6. 제25조의11을 위반하여 경업(競業)을 한 자	

현행법은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사가 업무 개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신고확인증’⁸⁾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 다른 사람이 행정사에게 신고확인증을 대여받는 행위 그리고 신고확인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제13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대여한 행정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고(제30조) 형사처벌(제36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하며, 대여받은 사람과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형사처벌(제36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신고확인증 외에 ‘자격증’⁹⁾의 경우에도 신고확인증과 같이 대여 및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신고확인증의 경우와 동일하게 자격취소 및 처벌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행정사 자격증은 신고확인증과 마찬가지로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발급되어 행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는바, 자격증에 대해서도 무자격자가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 및 처벌 규정 등을

8) 「행정사법」 제1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 추어 신고(이하 “행정사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생략)

제12조(신고확인증의 발급) ① 시장등은 행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생략)

9) 「행정사법 시행령」 제18조(자격증의 발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행정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로, 「공인노무사법」 및 「관세사법」에서 자격증 또는 등록증의 대여 및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위반시 등록취소(공인노무사법은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 및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¹⁰⁾¹¹⁾

10)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3(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①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인노무사로부터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징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1.~8. (생략)

9. 제20조의3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15. (생략)

② 삭제 <2020. 1. 29.>

③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구등록취소(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2. 등록취소

3. 3년 이하의 직무정지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譴責)

④~⑦ (생략)

제28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3의2. 제2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대여 등을 알선한 사람

4.~5. (생략)

③ 삭제 <2010. 5. 25.>

11) 「관세사법」 제12조(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관세사로부터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통관업을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등록의 취소 등)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제17조의3제5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7조의7, 제17조의8제2항, 제17조의9 또는 제17조의12를 위반하거나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제29조(벌칙) ① (생략)

②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

3. 폐업신고 관련 직권 말소(안 제16조제2항 신설)

개정안은 행정사가 폐업한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정사가 사망한 경우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해당 행정사의 업무신고 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폐업신고) ①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직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도 또한 같다. <u><신 설></u>	제16조(폐업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제1항 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행정사가 사망한 후 제1항 전

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 1. 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의 대여 등을 한 자 및 명의의 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4. 제12조제3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

5. ~ 7. (생략)

④ (생략)

6.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사람

현행	개정안
※참고조문 제17조(휴업신고)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u>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u> ⑤ (생략) ② (생략)	<u>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할 사람이 없는 경우</u> 3. <u>제17조제4항*에 따라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경우</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업무개시, 휴업, 휴업 후 업무재개, 폐업 등을 하는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¹²⁾¹³⁾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행정사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폐업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현행 제16조제1항은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 행정사 본인이 신고하되, 행정사의 사망으로 인한 폐업의

12) 「행정사법」 제1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행정사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생략)

13) 「행정사법」 제17조(휴업신고) ①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업무신고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휴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재개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⑤ (생략)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직원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안 제16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한 사유와 관련하여 행정사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관련 기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른 직권 말소의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보면,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사가 사망하였으나 신고할 가족·동거인·사무직원이 없는 경우, 휴업한 지 2년이 지나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경우¹⁴⁾가 해당하며,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정사 사망 후 대신 신고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방치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기존에 신고되었던 사항들을 말소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¹⁵⁾

14) 「행정사법」 제17조(휴업신고) ①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업무신고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휴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⑤ (생략)

15) 다만, 자구 수정의 측면에서 유사 입법례와 같이 조문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대상(예: 기존 신고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골재채취법」 제17조의2(골재채취업의 폐업)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4. 업무정지 사유 추가 및 행정사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사회의 업무정지처분 요청 신설(안 제32조)

개정안은 제22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제23조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 위반, 제25조의11에 따른 경업금지 위반의 경우를 업무정지 사유로 추가하고, 행정사회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정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업무정지처분을 요청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업무의 정지) ① 행정사사무소(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은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업무의 정지) ① ----- ----- ----- ----- ----- ----- ----- -----.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1. ~ 4.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2항 후단 또는 제25조의5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 또는 법인구성원이 상근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	개정안
3. 제17조제1항(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2항(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 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 <u><신설></u> <u><신설></u> 5. 제2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따로 사무소를 둔 경우 <u><신설></u>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업무처리부 자료 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u>4의2. 제22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u> <u>4의3.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u> 5. (현행과 같음) <u>5의2. 제25조의11을 위반하여 경업을 한 경우</u>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u><신설></u>	<u>④ 행정사회는 행정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정지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등에게 그 행정사의 업무정지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u>

현행법 제22조는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의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행위(당사자 양쪽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금지¹⁶⁾하고 있고, 제23조는 행정사(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¹⁷⁾ 하고 있으며, 제25조의11은 행정사법인의 법인

16)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행위. 다만, 당사자 양쪽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
4. 업무수임 또는 수행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
5.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
6. 행정사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17) 「행정사법」 제23조(비밀엄수)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행정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또는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이었던 사람)가 해당 행정사법인에 대한 경업을 하는 것을 금지¹⁸⁾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벌¹⁹⁾하도록 하고 있음.²⁰⁾

개정안은 현행법이 제22조, 제23조, 제25조의11에 각각 금지행위, 비밀엄수, 경업금지 등을 규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두고 있으나 동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행정사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어렵다고 보아, 영업정지 사유에 제22조,

18) 「행정사법」 제25조의11(경업의 금지) ①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행정사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이었던 사람은 그 행정사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행정사법인의 담당행정사로서 수행하고 있었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행정사법인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행정사법」 제36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행정사업무신고 또는 법인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한 자

2. 제21조의2에 따른 수입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22조제4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한 자

4. 제22조제5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를 한 자

5. 제23조(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6.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19조제2항(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자

2. 제22조제1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한 자

3. 제22조제2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당사자 양쪽으로부터 같은 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4. 제22조제3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한 자

5. 제22조제6호(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지한 자

6. 제25조의11을 위반하여 경업(競業)을 한 자

20) 「행정사법」 제25조의13(준용규정) ① 행정사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행정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제25조의11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사 제도 운영에 있어 위법행위를 근절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함)²¹⁾로 하여금 행정사에게 업무의 정지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정사의 업무정지처분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사무소를 개업하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행정사 단체로 하여금 자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많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안 제1항은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안 제4항은 행정사회의 업무정지처분 요청 대상으로 ‘행정사’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 요청 대상의 ‘행정사법인’의 포함 여부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1) 「행정사법」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행정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행정사회는 정관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행정사회의 설립·운영 및 설립인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행정사회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권 강화(안 제29조)

개정안은 대한행정사회로 하여금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의결이 법령, 행정처분,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행정사회에 대한 감독 등) ① 행정사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사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사회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상황과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29조(행정사회에 대한 감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행정사회는 총회 또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행정사회는 「행정사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동법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로서 개업하려면 의무적으로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함.²²⁾

행정사회는 동법 제2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사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사회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상황과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22) 「행정사법」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행정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행정사회는 정관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행정사회의 설립·운영 및 설립인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과 관련하여, 행정사회의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의결이 법령이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 기능 강화를 통해 행정사회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로 「공인노무사법」 및 「변호사법」에서, 각각 공인노무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협회의 고용노동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 대한 총회 의결(또는 결의) 내용 보고와 장관의 의결 취소(법령 또는 회칙에 위반되는 경우)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²³⁾²⁴⁾

23) 「공인노무사법」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공인노무사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공인노무사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의결이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④~⑥ (생략)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⑧ (생략)

24) 「변호사법」 제77조(감독)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어 취소할 수 있다.

제86조(감독)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6. 과태료 부과기준 재검토 삭제(안 제35조의2 삭제)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2년의 단위 타당성 검토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38조 ²⁵⁾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삭 제>

「행정사법」 제35조의2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동법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25) 「행정사법」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5조제2항 또는 제2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그 분사무소나 행정사법인 또는 그 분사무소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의2. 제25조의1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정사법인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하거나, 출입·검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3항(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다.

동 규정은 2013년 7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이 기존규제²⁶⁾에 대한 점검 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 등에 규정하도록 함²⁷⁾에 따라, 「행정사법」에도 2016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신설²⁸⁾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임.²⁹⁾

그런데, 2018년 3월 「행정규제기본법」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신설³⁰⁾³¹⁾하였고,

26)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생략)

3. “**기존규제**”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5. (생략).

② (생략)

27)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11935호, 2013.7.16. 일부개정, 2013.8.17. 시행) 제19조의2(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28) 「행정사법」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법률 제13296호, 2015.5.18. 일부개정, 2016.1.1. 시행)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9)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3438호, 2014.12.30. 정부 제출) 검토보고서”, 2015.2., p.9-11. 참고

30)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15037호, 2017.11.28., 일부개정 시행 2018.3.1.) 제3조(적용 범위)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신설)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15037호, 2017.11.28., 일부개정 시행 2018.3.1.) 개정 이유

- 현행은 벌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그 목적과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아니한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어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동 개정안은 「행정사법」에서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의 과태료 부과기준 재검토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당초 규정 신설의 근거가 되었던 「행정규제기본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³²⁾

문 의 처
02)6788-5339

32) 동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2년마다 과태료 관련 사항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현행 방식이 다소 변경될 수는 있겠으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검토 자체는 제도 개선 측면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보임.